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학생 및 교직원”을 “학생과 보호자 및 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3장제1절의 제목 “학생”을 “학생과 보호자”로 한다.

제32조 앞의 “제2절 교직원”을 삭제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32조, 제32조의2,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(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보호자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협력할 법적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
2. 보호자의 역량 함양,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보호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4.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
5. 보호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감이 수립·시행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⑤ 교육감은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2조의2(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관은 보호자의 역량 함양,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보호자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자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 현황

2. 보호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직·인력 및 예산 현황

3. 보호자 지원정책에 대한 보호자 및 교원의 요구 사항

4. 보호자 지원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과 외부 기관·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현황

5.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
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할 학교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⑤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⑥ 교육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33조(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) ① 법 제18조의8제2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·연구 및 정책 분석·평가
2. 보호자 지원 관계자 연수 과정의 개발·보급
3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호자 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호자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홍보 및 정보 제공
2.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 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
3. 소속기관 및 관내 학교가 보호자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·재

정적 지원

4.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

제33조의2(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정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
3.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
2.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
3.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 규정을 갖출 것

③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·기간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⑤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
3.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조직
4. 그 밖에 보호자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⑥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센터장 및 센터장 외 2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할 것
2.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공간, 교육 공간, 상담 공간 등을 갖추어 것
3.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 규정을 갖추어 것

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·기간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3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절 교직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장 <u>학생 및 교직원</u> 제1절 <u>학생</u> 제2절 <u>교직원</u> <u><신 설></u>	제3장 <u>학생과 보호자 및 교직원</u> 제1절 <u>학생과 보호자</u> <u><삭 제></u> 제32조(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) ① <u>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보호자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매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1. <u>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협력할 법적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</u> 2. <u>보호자의 역량 함양,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</u> 3. <u>보호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· 운영에 관한 사항</u> 4. <u>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</u> 5. <u>보호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</u>

<신 설>

6.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감이 수립 · 시행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시 ·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⑤ 교육감은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2조의2(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관은 보호자의 역량 함양,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기 위하여 보호자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자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 현

황

2. 보호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직

· 인력 및 예산 현황

3. 보호자 지원정책에 대한 보호자
및 교원의 요구 사항

4. 보호자 지원을 위한 학교 및 교
육청과 외부 기관·단체 등의 협
력체계 구축 현황

5.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
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
관이 정하는 사항
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
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
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
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
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
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
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
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
다.

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
받은 경우 관할 학교 및 관계 기관
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
등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업
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⑤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⑥ 교육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33조(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) ①

법 제18조의8제2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·연구 및 정책 분석·평가

2. 보호자 지원 관계자 연수 과정의 개발·보급

3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호자 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호자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홍보 및 정보 제공

2.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 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

<신 설>

3. 소속기관 및 관내 학교가 보호자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

4.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

제33조의2(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정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국 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

3.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

2.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

3.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 규정을 갖출 것

③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·기간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⑤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

3.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·운영하는 기

관 또는 조직

4.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
⑥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센터장 및 센터장 외 2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할 것

2.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공간, 교육 공간, 상담 공간 등을 갖출 것

3.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 규정을 갖출 것

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·기간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2절 교직원